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NEWSLETTER

* 본 뉴스레터는 상해총영사관의 법률지원
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March, 2025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86-21-5208-2808 Fax. +86-21-5208-2807 Email. shanghai@jipyong.com www.jipyong.com

법무법인(유) 지평의 중국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CONTENTS

목차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86-21-5208-2808 Fax. +86-21-5208-2807 Email. shanghai@jipyong.com
Copyright 2013 JIPYONG All Rights reserved.

법무법인(유) 지평의 중국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 법률 뉴스 ■

2024 년 11 월 11 일, '중국 내에서 취업하는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에 관한 잠정방법' 개정에 관한 결정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제 41 차 부무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었으며, 2024 년 12 월 23 일로부터 시행됩니다.

■ 최신법률법규 (별첨) ■

01. 시장감독총국 《공정경쟁심사조례 실시방법》을 발표
02. 최고인민법원 <선불소비 사법해석> 발표
03. 국세총국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정산 및 납부 관리 방법> 공포
04. 최고인민검찰원, <민간 대출 등 사건 집중 검토 56 차 지도적 사례> 발표

■ 법률 뉴스 ■

2024년 11월 11일, ‘중국 내에서 취업하는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에 관한 잠정방법’ 개정에 관한 결정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제 41차 부무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었으며, 2024년 12월 23일로부터 시행됩니다.

중국의 ‘외국 공문서 인증 요구를 폐지에 관한 협약’ 가입 의무를 이행하고,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과 관련 증명서 명칭과 코드 규칙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내 외국인 취업자의 사회보험 가입에 관한 잠정조치’ (인력자원사회보장부령 제 16호)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 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중국 내에서 취업하는 외국인이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정당하게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보험 제도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이하 ‘사회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해 본 규정을 제정합니다.

제 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중국 내에서 취업하는 외국인이란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취업허가증’, ‘외국 상주기자증’ 등 취업 관련 증명서와 외국인 거류증을 법에 따라 취득하였거나, 외국인 영주거류증을 소지하고 중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 중인 중국 국적이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제 7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중국 외에서 매월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 외국인은 매년 한 번씩 사회보험 혜택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 확인은 중국 주재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발급한 생존 증명서를 지급 담당 사회보험 취급 기관에 제출하거나, 거주국의 관련 기관에서 공증·인증한 뒤 중국 주재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다시 인증받은 생존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자가 인증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중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약에 따라 처리합니다.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중국에 입국한 경우, 매년 한 차례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 확인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터넷으로 자가 인증을 하거나, 사회보험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고용 단위가 법에 따라 취업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외국인 영주권을 소지한 외국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외국인의 중국 내 취업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중국 경내 고용단위에 고용된 직원은 국적을 불문하고 사회보험(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출산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중국 내에서 취업중인 한국인 직원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사회보험 협정’(이하 ‘협정’)에 따라 기본 양로보험과 실업보험 가입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협정은 이중가입을 면제해 주기 위한 것으로, 한국에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중국 양로보험 및 실업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 최신법률법규 (별첨) ■

01. 시장감독총국 《공정경쟁심사조례 실시방법》을 발표 
02. 최고인민법원 <선불소비 사법해석> 발표 
03. 국세총국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정산 및 납부 관리 방법> 공포 
04. 최고인민검찰원, <민간 대출 등 사건 집중 검토 56 차 지도적 사례> 발표 

범무법인[유] 지평